

## 선지급서비스특약

1. 보험종목의 명칭

선지급서비스특약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

가. 가입나이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에 따른다.

나. 보험기간

이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3.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이 특약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이 특약은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는다.

5.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이 특약은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

6. 부가대상 보험계약

이 특약은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7. 사망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

가. 선지급조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로 한다.

나. 선지급 사망보험금액의 한도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의 50%이내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1억원까지로 한다. 다만, 1000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선지급방법

선지급 사망보험금액에서 다음에 정한 (1) ~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지급한다.

- (1)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명기간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 (2)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명기간의 보험료
- (3)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

라. 선지급후의 처리

선지급 한 사망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일에 감액 처리하며, 감액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 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대해서도 “가” ~ “라” 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주계약 사업방법서를 따른다.